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2년 6월 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7.(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6. 6.(월)	담당부서	석탄광물산업과
담당과장	임형진 과장(044-203-5260)	담 당 자	김수현 사무관(044-203-526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6.7(화) 국무회의 의결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을 위한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신설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1.6.15 개정, '22.6.16 시행) 주요내용 >

▲ **(광해방지기술인)** 광해방지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경력 취득자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정의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수행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실적을 유지·관리하고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③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인정취소)** ①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③광해방지기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

□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②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③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임

○ 우선, ①**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기술자격 및 학력·경력)과 ②**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권고한 현행 ③**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며,

- 전문분야별로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 폐지**

-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를 추가**하여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복원을 유도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52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조의2 발췌)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계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나. 기능장: 전기 분야 다. 기사: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라. 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가.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계	가. 기능사: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	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학력·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